

□ EU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 분석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적용 범위	법률 적용범위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accessed)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	의정서 발효 후 접근 또는 이용되는(accessed or utilized)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에도 적용	환경위원회가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유럽의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 또는 이용(accessed or utilized)”이라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에 접근된 유전자원을 종자은행 등에 보관하다, 발효 전까지 이용되지 않는 유전자원이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에 명시적으로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까지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상업화는 판매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임대 또는 공동연구도 포함될 수 있음.	국내 이행법률의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된 “유전자원의 이용”, 즉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적용대상	유전자원의 정의를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로 한정하고 있음	위 유전자원의 정의에 그 파생물(derivatives thereof)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정의와는 달리, 유전자원의 범위에 파생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파생물에 대한 정의는 의정서의 정의 규정을 사용함	우리나라의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생물자원 ¹⁾ 이라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파생물을 포함한 유전자원”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음. 파생물에 대한 정의도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시간적 적용범위	유럽연합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만을 시간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이용되는(utilized)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의정서 발효 전 적법하게 취득되어 종자은행 등에 보관된 유전자원이라 할지라도 새롭게(newly) 이용되는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의정서 발효 전에 취득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은행 등에 보관되어 있는 유전자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바이오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1) 협약은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 그리고 관련 전통 지식	주권적 권리의 대상 규정을 삭제하여, 주권적 권리의 대상과는 관계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원에 적용된다고 규정	주권적 권리의 대상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국가 이원 지역, 국제수로, 공해 등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도 ABS 레짐의 범위 내로 편입시켜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제4조 이익공유, 제10조 다자이익공유기금, 제14조 ABS Clearing House 적용을 받게 될 것임. 경우에 따라 제15조 및 제17조 이행준수의 대상도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입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 제15조가 자국 관할권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은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PIC와 MAT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에 따라, 향후 외국의 유전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ABS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정의	접근 (access)	“접근”이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해당 당사국의 관련 ABS 법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 (acquisition)하는 것”이라고 규정	“접근”이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관련 ABS 법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 (acquisition)하는 것”이라고 규정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정의 규정을 두어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인 원산지국의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비당사국인 원산지국의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이는 제4조 이익공유, 제10조 다자이익공유기금, 제14조 ABS Clearing House 적용을 받게 될 것임. 경우에 따라 제15조 및 제17조 이행준수의 대상도 될 수 있음
	이용자 (user)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use)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utilize)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근거한 가공품 (products)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후속적으로 판매 하는 (commercialise) 개인 또는 법인”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 또한 비가공 상태의 유전자원 이용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전자원 가공품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나아가 유전자원을 실제 이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업체들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유전자원 가공품을 수입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홍보 및 지도를 위해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정의	유전자원의 이용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된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 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문구를 삽입	명확성 제고
	생명공학기술	정의 규정 없음	“생명공학”이라 함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협약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유전자원 이용”의 정의에 포함된 “연구 및 개발”의 방법 과 수단에 대한 범위 명확화
	연구 및 개발	정의 규정 없음	“연구 및 개발”이란 “신제품 (innovations) 생산과 실제 응용을 포함하여 사실(facts)을 확립하고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 하고 연구(study)하는 것”을 의미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유전자원 이용”의 의미를 좀 더 명확화하고 있음. 즉 “연구 및 개발”에는 신제품 생산과 실제 응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의 결론이나 새로운 결론을 달성할 목적으로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을 “조사”하고 “연구 (study)”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는 IUCN이 발간한 “나고야의정서 해설지침 65 쪽“에 나타난 나고야의정서 문맥에 맞게 정의한 것임	“유전자원 이용”의 적용 시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정의	파생물 (derivatives)	파생물에 대한 정의조항 없음	“파생물”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유전자원 이용”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파생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의정서에 정의된 “파생물”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함	유전자원의 범위 안에 파생물을 포함한 이상 파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상호합의 조건 (mutually agreed terms)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provider)와 그러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상의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s)으로서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conditions and terms)을 포함할 수 있음	이건 없음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전통지식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relevant) 그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조건에 전통지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을 의미함”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relevant)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을 의미함”	환경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MAT에 관련 전통지식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에만 인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유럽의회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관련 전통지식”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원 이용(use)을 위해 관련된(relevant) 전통지식이라고 정의하여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음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정의	수집 (collection)	“수집”이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유전자원의 수집표본 (collected samples)과 관련 정보의 집합체(ensemble)로서 축적, 보관 그리고 분류학적으로 확인된(accumulated, stored, and taxonomically identified) 것을 의미	이견 없음	유럽연합이 설립할 유전자원신탁등록처 (Trusted Collection)에 보관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 수집행위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	우리나라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립환경자원관에 수집 또는 보관될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음
	국제이행 준수인증서	“국제이행준수인증서”란 “나고야의정서 제6(3)(e)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는 접근허가증(access permit) 또는 상응하는 증서로서 ABS CH에 통보된 것”을 의미함	-	나고야의정서 제6(3)(e)조에 규정된 내용을 사실상 복사한 것이지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임	“국제이행인증서”는 유전자원 제공국 또는 원산지국의 국가책임기관이 PIC과 MAT이 체결되어 해당 국가의 ABS 법률 및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증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불법 취득 유전자원 (illegally acquired genetic resources)	-	“불법 취득 유전자원 (illegally acquired genetic resources)”이란 “관련 국제법 또는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의미함	환경위원회가 규정하지 아니한 정의를 유럽의회가 마련한 것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의 금지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주목할 점은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applicable international)”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 이는 향후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불법 취득 유전자원”으로 간주될 것으로 해석될 것임	이행법률의 대표적 금지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 특히 이용국의 의정서 이행법률이 아니라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이 적용 법률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이 부재한 경우 규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정의	biopiracy	-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 자원 또는 그러한 유전 자원의 가공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 또는 후속적으로 상업화하는 것	이행법률의 금지행위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에 포함될 “바이오절도”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을 위해 유럽의 회에 의해 신설됨	이행법률의 벌칙 대상으로서 바이오절도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필요한 조항. 유의할 점은 불법 취득 유전자원의 판매뿐만 아니라 이용(utilization), 즉 연구, 개발하는 행위조차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
이행 준수 의무 이행 방안	일반적 (기본적) 금지의무	-	유럽연합 내에서 “바이오절도(biopiracy)”는 금지	유럽연합 내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모두에게 일반적 금지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 자원 또는 그러한 유전자원의 가공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 또는 후속적으로 상업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행법률이 이용자의 기본적 의무로서 채택하고 있는 “적절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추가되었음. 동 규정은 "목재 및 목재 상품 판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No 995/2110, OJ L 295, 12.11.2010. p. 23)"에 규정된 내용을 참조한 것임	우리나라의 ABS 이행법률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이나 그 가공품 그리고 전통지식을 직접 이용 또는 응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제공, 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반적 금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적절 주의의무 (due diligence obligation)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 따라 접근되었고, 그리고 관련되는 경우 이익공유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ascertain) ²⁾ 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행사하여야 함.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PIC와 MAT을 체결하여 접근되었고, 그리고 이익공유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ascertain) ⁴⁾ 하여야 함 이용자는 ABS 관련 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의 의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와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음. 첫째, 환경위원회는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 따라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적절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였으나, 유럽의회는 위 법률이나 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PIC과 MAT을 체결하여 유전자원이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의무로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제공국이나 원산지국의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는가가 아니라, 동 법률이나 요건에 따라 PIC과 MAT의 체결하여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의무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나	이행준수 의무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의무 중의 핵심으로 이용자에게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임. 유럽의회의 접근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위 평가 참조

		<p>이용자는 ABS 관련 정보를 탐색(seek)³⁾,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함</p>	<p>은 정보와 문서, 그리고 동 법률 규정의 준수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탐색(seek),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함</p>	<p>고야의정서 제15조1항이 요구하는 바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p> <p>둘째,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그리고 이행법을 준수사항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무를 극대화 하고 있음.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와 문서 그리고 이행준수 과정을 탐색, 보관, 그리고 전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이력추적(tracking)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의무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MAT에 이러한 의무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능은 결국 점검기관의 의무가 될 것임.</p> <p>셋째,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합법적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 또는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적절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용자가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 및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하는데 나태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적절 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입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p> <p>넷째, 환경위원회는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MAT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럽의회는 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MAT에 따라 이익공유를 요구하여 MAT를 강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나고야의정서는 이익 공유를 반드시 MAT를 통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접근방식이 의정서와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p> <p>다섯째, 탐색(seek)은 반드시 찾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p>	
--	--	---	---	--	--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이행 준수 의무 이행 방안	최초의 PIC과 MAT에 따른 양도의무	-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은 PIC와 MAT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후속이용자는 최초의 MAT와 부합되게 수령된 물질만을 이용할 수 있음. PIC와 MAT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의 MAT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후속이용자는 새로운 용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원산지국으로부터 PIC를 취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함.	동 조항은 목적은 모든 단계의 이용자로 하여금 PIC와 MAT를 준수하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최초의 MAT와 변경된, 확대된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조건의 MAT를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PIC이나 MAT에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할 의도인 경우 새로운 MAT를 체결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국가 이원지역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의무	-	국가 이원지역 유전자원, 또는 원산지가 확인될 수 없는 유전자원, 또는 PIC의 발급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의 새로운 이용자(new users)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따라 다자이익공유체계가 설립되기 까지 유럽연합 다자이익공유기금에 이익공유를 제공하여야 함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목적에 부합되게 이익공유의 대상은 MAT가 체결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PIC이나 MAT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유전자원까지 확대하고 있음. 이는 공해나 종자은행 또는 식물원 등에 PIC이나 MAT 없이 존재하는 “역사적 유전자원”을 염두에 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IC과 MAT이 없는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해 다자이익공유기금에 대한 이익공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Oxford Dictionary, to find out the true or correct information about sth.

3) Oxford Dictionary, look for sth; try to achieve or obtain sth

4) Oxford Dictionary, to find out the true or correct information about sth.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				
	1.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기본 정보 탐색, 보관 및 전달 의무	<p>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탐색 및 보관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일자와 장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내역(description)(이용 가능한 고유인식번호 포함)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이 직접적으로 획득된 출처(source)와 그 후속적 이용자 -ABS 관련 권리와 의무의 존재 여부 -해당되는 경우, 접근 결정과 MAT 	<p>이용자가 위 네 개의 정보를 탐색, 보관, 전달할 의무 외에 접근결정과 MAT 외에 이익공유약정(benefit sharing arrangements)을 포함하고 있음</p>	<p>이용자의 구체적 의무에 접근 일자와 장소, 그리고 직접적으로 획득된 출처의 공개를 포함하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disclosure)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1항a호에 규정된 점검기관의 기능 중 강제성이 없는 출처공개요건을 강제하여 바이오절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특징을 보임</p>	
	2. 지속적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의무	<p>접근 및 사용의 적법성(illegality)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persist) 경우, 추가 정보 또는 증거 획득(obtain)⁵⁾의 의무</p>	-	<p>유전자원 취득과 사용(use)행위의 적법성이 의심스럽고, 이러한 의혹이 계속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즉 PIC과 MAT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부과됨</p>	<p>위법가능성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의 착오 등과 같은 항변사유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p>

5) Oxford Dictionary, get sth, particularly by making an effort

항목	세부항목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평가	시사점
	3. 외관상 위법성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ABS 법률이나 요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외관상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허가증의 취득, MAT 체결, 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외관상 위법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치 최초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 부과	위법사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새로운 접근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4. 20년간 정보 보관 의무	사용(use) 종료 후 20년 동안 ABS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유전자원 <i>이용 또는 후속 상업화</i> 종료 이후 20년 동안 ABS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환경위원회가 ABS 관련 정보 보관 의무 개시일을 유전자원 사용의 종료일에 한정된 것을 유럽의회는 상업화 종료일 후 20년까지 연장하여 보관의무 기간이 상당히 연장됨	ABS 관련 정보 보관의무의 개시일과 기간을 정하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음
	5. 신탁 유전자원에 대한 적법성 간주	유럽연합 유전자원신탁등록처(Union register of trusted collections)에 등록된 보관품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한 사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ABS 관련 정보를 탐색에 관한 적절 주의 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됨(considered)	<i>적법한 PIC와 MAT에 접근사실 확인 의무, 최초의 PIC/MAT에 양도 의무, 국가이원지역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i> , 유럽연합 유전자원신탁등록처(Union register of trusted collections)에 등록된 보관품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한 사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ABS 관련 정보를 탐색에 관한 적절 주의 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됨(considered)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등록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적절 주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등록을 권고 또는 장려하는 효과를 발생함	개인 또는 기관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신탁된 유전자원에 대해 적절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 유전자원에 대한 자발적 신탁을 장려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의무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항목	세부항목	규정
유전자원신탁 등록처 운영방 안	신탁등록처 설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위원회의 <u>자발적</u> 신탁등록시스템 설립 및 운영 의무 ○ 등록처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개방형의</u> 인터넷 방식으로 운영되고, 유럽연합 보관신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된 유전자원 보관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보관시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보관시설을 유럽연합보관등록처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회원국은 보관시설이 보관신탁기준을 족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보관시설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유형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함. 위원회는 수령된 정보를 지체 없이 보관신탁등록처에 포함하여야 함
	유럽연합 보관 신탁시설 등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이 보관신탁등록처에 포함되기 위해서 보관시설의 소유자는 유전자원 샘플과 관련 정보를 다른 보관시설과 교환하고 제3자 사용 목적을 위해 제공할 자격(capacity)을 입증(demonstrate)할 것 ○ 유전자원의 샘플과 관련 정보를 제3자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가 해당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 및 MAT에 따라 접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첨부할 자격을 입증할 것 ○ 제3자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유전자원의 샘플과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 보관 자격을 입증할 것 ○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유전자원 샘플의 고유인식번호(unique identifiers)를 확립(establish) 또는 사용할 능력의 입증 ○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의 샘플을 다른 보관시설과 교환하는데 적절한 추적 및 감시 장치를 사용할 능력
	유전자원 보관 등록시설 관련 회원국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유럽연합보관신탁등록처에 등록된 자국 내 보관시설이 보관신탁시설 등록기준에서 정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회원국은 자국 내 보관시설이 보관신탁시설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환경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책임기관 및 연락기관 관련 회원국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동 규정의 적용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책임기관의 지정하고, 규정의 발효 시 그 명칭과 주소를 환경위원회에 통보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경위원회에 통보할 것 ○ 환경위원회는 책임기관의 목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갱신할 것(update) ○ 환경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CBD 사무국과 연락을 담당하는 ABS 연락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u>ABS 책임기관과 연락기관은 일반대중과 잠재적 이용자에 대해 동 규정과 CBD 관련 규정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유럽의회 신설)</u>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적 연구자금 수령자의 적절 주의 의무 선언 (유럽의회에 의해 삭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제6조1항에 따라 설립된 책임기관에 대해 제4조의 준수사실을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p>가. PIC와 MAT 확립 시</p> <p>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이용 관련 연구기금 수령 시</p> <p>다. 국내, 지역 또는 국제기관에, 특히, 접근된 유전자원, 파생물을 포함한 가공품 그리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제법,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한 특허신청 또는 새로운 식물품종에 권리 신청 시</p> <p>라.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의거하여 개발한 제품의 시장판매승인 신청 시</p> <p>마. 시장판매승인이 요청되지 않는 경우 상업화 시</p> <p>-보관 과정의 엄격성 및 추적가능성 그리고 법적 확실성 담보를 위해 이행준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p> <p>-모든 중요한 보관 및 관리 단계에 점검기관을 설립하고 동시에 그 절차를 일원화하여 잠재적 미비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p> <p>○ 책임기관은 위 1,2항에 따라 수령된 정보를 2년 마다 환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함. 나-마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증(verify)하여 동 조항에 따라 수령된 정보를 3개월 이내에 환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함. 환경위원회는 수령된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요약하여 국제이행준수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ABS CH 와 일반대중에게 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인터넷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함</p> <p>-나고야의정서 제17조 국제이행준수증명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임</p> <p>○ 환경위원회에 대해 위 3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이행위법 채택 권한을 부여함. 이행입법은 제 15.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를 거쳐 채택됨</p>
	모범관행	<p>○ 이용자 단체의 모범관행 제출권</p> <p>○ 환경위원회의 모범관행 인정 의무</p> <p>○ 변경 또는 갱신된 모범관행 통지의무</p> <p>○ 모범관행 결함에 대한 심사의무</p> <p>○ 책임기관의 국제이행준수인증서 수락의무</p> <p>○ 비효율적 모범관행 철회 의무</p> <p>○ 환경위원회의 모범관행 확립 및 갱신의무</p> <p>○ 환경위원회의 모범관행 관련 의무 이행절차 수립을 위한 이행법률 채택권</p>
이용자의 이행		<p>○ 점검기관: 책임기관은 제4조와 제7조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이용자의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p>

	<p>준수 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원칙: 점검은 위반가능성해결방식에(risk-based approach) 정기적 검토계획에 따라 수행될 것. 위험기반접근방식을 개발하는데 있어, 회원국은 규정 제8조2항과 나고야의정서 제20조상의 모범관행에 대한 이용자의 이행준수가 위반 가능성(risk of non-compliance)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할 수 있음 ○ 점검발동요건: <u>추가적인(유럽의회안)</u> 점검의 수행은 규정 위반에 관해 제3자가 제공한 실질적 내용(substantiated concerns)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가능함 반드시 수행될 것 ○ 점검방법: 제1항에 언급된 점검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 행사를 <u>준수하기(유럽의회)</u>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한 심사(exa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 모든 사항이 이행준수점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 나. 특정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제4조에 따라 적절주의의무 행사를 <u>이행준수(유럽의회)</u>를 입증하는 문서 및 기록의 조사 다. 현장감사를 포함한 실사점사(spot checks) 라. 제7조상의 자발적 신고(declaration) 내용에 대한 심사 ○ 국제인증서 수락의무: 책임기관은 국제인증서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이 PIC를 발급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법률 또는 요건에 따라 PIC과 MAT에 따라 접근 및 확립되었다는 증거로서 국제인증서를 수락할 의무 ○ 점검업무에 대한 이용자의 협조의무: 제1항에 언급된 점검업무, 특히 시설 출입과 문서 및 기록의 제출 등에 대한 용이성을 위해 협조 ○ 시정조치 발동의무: 제11조 벌칙조항과는 별도로 제1항과 <u>제3항(유럽의회)</u>의 점검업무 수행 후 <u>또는 제7조2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 후</u>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기관은 시정조치를 발동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적으로 <u>이용자의 응답이 없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경우</u>, 그리고 발견된 하자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은 즉각적인 잠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특히 불법취득유전자원의 압수 그리고 특정 용도의 이용행위를 중지할 수 있고, <u>이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조된 상품의 상업화 금지를 포함(유럽의회)</u> * 잠정조치의 대상에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상품의 판매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환경위원회의 위임조치 채택권 ○ 점검기록 보관의무: 책임기관의 점검기록과 그 성격 및 결과, 시행조치 에 대한 최소 5년간 보관의무
--	----------------	---

벌칙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와 제7조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처벌조치 수립과 이행조치 채택 의무 ○ 벌칙의 원칙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칙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일 것(dissuasive) -벌칙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유전자원 이용행위에 상응하는(proportionate)하고 그리고 위반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효과적 박탈에 최소한 상응하는(유럽의회) 벌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효과적 이행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수준일 것을 천명함. 이 원칙은 IUU 규정 제46조에 포함된 원칙을 채택한 것임 나. 특정 이용행위에 대한 즉각적 중지, <u>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판매금지를 포함함(유럽의회)</u> 다. 불법취득 유전자원의 몰수 ○ 이행조치의 통보의무: 회원국은 채택된 이행조치를 환경위원회에 통보할 의무 부담
	협력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과 협력 의무: 책임기관은 제3국의 책임기관이나 행정당국 그리고 환경위원회와 이행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 정보교환의무: 책임기관은 제9조1항에 언급된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반에 관한 정보와 제11조에 부과된 벌칙